

의안번호 제51호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윌일	2017. 6. 12.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51호 제출연월일: 2017. 6. 12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. 08. 04일 완료됨에 따라 『논산시취 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』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: 2017. 5. 15. ~ 2017. 6. 5.

(나) 결과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건설정책과

□ 폐지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도시주택과장	조 삼 구
안	도시재생정책팀장	이 승 노
자	담 당 자	김 갑 중 (746-6204)

참고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사업의 명칭은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(이하"사업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- 제3조(시행지구 및 토지면적) 이 사업은 논산시 취암동 일원 토지로서 사업시행인가 된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(이하 "사업계획"이라 한다)에 의한다.
- 제4조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·분합 기타의 구획변경, 지적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·변경,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(지장물처리포함) 및 체비지의 관리 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.
- 제5조(사업기간)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(이하 "인가일"이라 한다)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사업시행자(이하"시행자"라 한다)의 사무소는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다.

- 제7조(사업비용)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, 징수청산금,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공고) ① 사업시행등과 관련된 사항의 공고는 관보 또는 논산시공보 등에 개재하여 공고한다. 다만,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토지 등의 평가) ① 사업시행전(이하"정리전"이라 한다) 또는 사업시행후(이하 "정리후"라한다)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논산시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(이하"토지평가협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.
 - ② 정리후 고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본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.
- 제10조(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)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환지계획 기준)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기본으로하고 법 제48조

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전·후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며 환지위치는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있는 ② 인가일 현재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공공요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④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의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고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 정할 수 있다.
- ⑥ 아파트단지내 토지로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이동환지할 수 있고,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에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는 아파트단지로 집단환지 할 수 있다.
- ⑦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한다.
- ⑧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의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있다.

- 제12조(토지의 관리 및 사용) ①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. ②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 (이하"토지소유자등"이라 한다)은 사업시행상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환지예정지사용승낙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받은 후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.
- 제13조(체비지 관리 및 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초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 으며,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14조(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) ① 체비지 및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은 정리전·후 토지의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자가 정한 일정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 ② 체비지 및 공공용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지구안에 법령상 환지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종전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여, 부담방법으로는 정리전·후 토지의 평정가격을 기준으로하여시행자가 정한 일정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- 제15조(청산금)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확 정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인가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한다. 다만,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.

제16조(환지예정지측량)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후에 환지 예정지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측정도 교부등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「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(개정 2013.9.23)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